

응봉대림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2007. 3. 7. 조합설립인가가 된 응봉대림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(응봉동 100번지 소재)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94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30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종류 : 리모델링주택사업

나. 사업명칭 : 응봉대림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00

나. 면 적 : 46,394㎡

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조합명칭 : 응봉대림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

나. 소 재 지 : 성동구 응봉동 100

4. 조합설립인가일 : 2007. 3. 7.

5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: 2026. 4. 30.

6. 취소사유 : 「주택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총회 개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같은 법 제14조, 제94조 및 제9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함